

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점객업설치조례안

(의안번호 제60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14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2. 2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 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
- 1997년 9월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,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침해가 없는 준 농림지역 내 식품점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을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 지정(안 제3조)
- 나.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 대한 규정(안 제4조)
- 다. 안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규정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

- 1997. 9.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
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침해가 없는
준 농림지역 내 식품점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소를 설치도록 필요한
사항을 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